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윤 기 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5선거구 윤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14세 미만의 경우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소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살인·강간·강도·추행·방화·절도 등 촉법소년 강력범죄자 중 만 13세 비중이 62.7%에 달하고 있고, 최근 마약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촉법소년 등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촉법소년 연령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높으며, 「형법」 및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 기준이 70여 년간 동일함에 따라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22년 10월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통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률안이 계류 중임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의회는 소년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소년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